



# 어린이집 CCTV 열람, 사본제공 시 모자이크 또는 개별동의 규정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CCTV 열람 및 사본 제공 요청 시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노력에 대한 구체적 규정(모자이크 처리 및 개별 동의)이 없었습니다만**

2021.04.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여 교재 제공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연락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전정식 (010-3898-9138)



# 어린이집 CCTV 열람, 사본제공 시 모자이크 또는 개별동의 규정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2021.04.14 개정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공기관,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됨

○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법률이므로, 동 법률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예 :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법 제6조)

**[Q]**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지?

A.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 모자이크 처리 등)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5헌마994, '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열람, 사본제공 시 모자이크 또는 개별동의 규정

 열람 전 확인사항 -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여부) **2021.04.14 개정**

## CCTV 열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원본 열람**

- ❖ 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인 규정 없음
- ❖ 공익(학대, 안전사고) > 사익(개인정보권리)

**기준 근거**

- ❖ 영유아보육법
- ❖ 헌법재판소 판시에 근거(공익 > 사익)
- ❖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23쪽
- ❖ 민간분야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쪽

## CCTV 사본 제공

**모자이크 처리 또는 개별 동의 후 제공**

- ❖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열람의 범위를 초과
- ❖ 해당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하거나
- ❖ 해당영상에 포함된 영유아, 보육교사등 개별 동의를 득해야 함

**기준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 ❖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23쪽
- ❖ 민간분야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쪽